18.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 1. 심사경과

O 제출일자 : 2021년 6월 4일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O 회부일자: 2021년 6월 8일

O 상정일자: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문화복지위원회(2021년 6월 21일) 원안 가결

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)

#### □ 제안이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재단법인인 대구오페라하우 스의 임원 구성 시, 특정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 하고,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내용

O 임원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 단서)

- O 안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원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함.(안 부칙 제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, 제22조, 제2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홍병탁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**안 제6조**는 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음.
- O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임원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동 조례안의 시행을 적용하도록 하였음.
- 그밖에 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22조, 제24조에서는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부 단어의 용어 변경 등 자구 수정으로 조문을 재정비하였음.

#### □ 검토결과

O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<sup>28)</sup> 에 따라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

<sup>28)</sup>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-3356(2017.6.28.)호 「도시재생, 건축, 안전 분야 조례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 보

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- O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기준에 특정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 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음.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0조제1항29)에서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 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1조제2항30)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 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의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O 2021년 6월 현재,
  -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당연직 2명(이사장: 대구시장, 이사: 문화체육 관광국장)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성별현황은 남성 10명, 여성 2명으로 남성비율이 83%에 달하는 등 두 재 단의 임원진 구성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.
- O 따라서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의 이념을 대구시의 정 책결정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정책 및 의사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<sup>29)</sup>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(적극적 조치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sup>30)</sup>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성별 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0. 5. 19.〉

<sup>1.</sup>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<sup>2.</sup> 시・군・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・도위원회

- 또한,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본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- O 향후 재단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능력 있는 여성 임원의 참여를 확대시켜,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의사결정을 통해,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이라는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음.

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임원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성별뿐	
아니라 연령, 직업군 등 다양한 계층이	좋은 지적이며, 향후 임원 구성에 최대한
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	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.
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	

#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#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